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 정정보도 사례 01 2022광주조정19·20/21·22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조합장의 이권 전횡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별도의 민사상 책임은 묻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고소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J 씨가 조합장 당선 직후 자신이 경영 중이던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기고,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단호박을 법인 저온창고에 보관해 가족 농장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구별 없이 판매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으며, 법인 이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중요 부서의 팀장에 보직하는 등 이권을 전횡하거나, 조합장 신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단호박 선전 광고를 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인이 감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은 조합장 당선 전 폐업했으며, 법인 이사는 전임 조합장 재임 시절 직원으로 채용됐고, 신청인 소유의 단호박 전문 보관창고를 농협에 무상으로 임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단호박을 장기 저장하였을 뿐, 조합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호박 광고를 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 접수 후 취재활동을 거쳐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면서도, 법인 폐업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정정보도 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되 당시 진행 중인 형사고소 절차는 유지되길 원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상 책임만 묻지 않는 부제소 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조합장은 2년 전 조합장 당선 직후 경업금지 농협법에 따라 자신이 대표로 경영 중이던 영농조합 법인 ○○○○ 대표직을 사임한 후 자신의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겨 계속적으로 가족회사 격이 된 ‘○○○○○○’을 이용 직권을 남용한 사례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써 단호박은 △△ 농협 조합원들의 특산품으로 알려진바 농민이 수확하여 수매한 단호박을 가족 운영 영농조합 법인(○○○○○○)의 저온 창고에 보관 자신 가족 농장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구별 없이 판매하므로 조합원들로부터 “품질이 좋은 것은 자신의 물량인 양 판매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가 하면 가족 소유 법인 농장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해임 절차 없이 △△농협에 직원으로 채용, 핵심 중요 부서로 알려진 농협□□ ◇◇팀장으로 보직하는 등 조합장 직위를 이용한 이권 전횡을 성토하고 있다. **[중략]**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신분을 가족 법인 회사를 배경으로 ☆☆☆ 쇼핑몰에 단호박 선전 광고를 하는 행위는 조합장 신분을 남용한 조합장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며 조합원의 단호박이 마치 ○○○○의 생산품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문

**보도부제목:** ▽▽ △△농협조합장 직위이용 이권 전횡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XX. X. X자 사회면에<▽▽ △△농협조합장 직위이용 이권 전횡>이라는 제목과 <지역특산품 단호박 수거 및 판매 경영 금지조항 위반> <가족 경영법인 쇼핑몰 광고 조합장 신분 모델 부적절>이라는 소제목으로 ▽▽ △△농협조합 조합장인 정<<씨가 조합장에 당선된 직후 자신이 대표로 경영 중이던 영농조합 법인 ○○○○○○ 대표직을 사임한 후 자신의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겨 계속적으로 가족회사 격이 된 ‘○○○○○○’을 이용 직권을 남용하였고, 가족 소유 법인 농장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해임 절차 없이 △△ 농협에 직원으로 채용, 핵심 중요부서로 알려진 농협□□ ◇◇팀장으로 보직하는 등 조합장 직위를 이용한 이권 전횡을 하였으며, 농민이 수확하여 수매한 단호박을 가족 운영 ‘○○○○○○’의 저온 창고에 보관 자신 가족 농장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구별 없이 판매하였으며,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신분을 가족회사 법인 회사를 배경으로 ☆☆☆ 쇼핑몰에 단호박 선전 광고를 하는 행위는 조합장 신분을 남용한 조합장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며 조합원의 단호박이 마치 ○○○○○○의 생산품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농협조합 조합장인 정<<씨는 조합장에 당선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의 대표를 사임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긴 사실이 없고,



‘○○○○○’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농협에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농민이 수확하여 조합이 수매한 단호박과 신청인이 생산한 단호박을 ‘○○○○○’의 저온 창고에 보관하여 구별 없이 판매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 신분이나 가족회사 법인 회사를 배경으로 ☆☆☆ 쇼핑몰에 단호박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일간신문 4면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주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주제목과 같은 크기로, 부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통상의 기사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마지막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정정보도 사례 02** < 2022서울조정325, 326 각 정정청구

<b>신청인 유형</b>	개인(국회의원)
<b>피신청인 매체유형</b>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b>처리결과</b>	조정성립(정정보도, 일부 열람차단)

국회의원에 대한 송방망이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를 게재하면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동영상 속 진행자의 발언을 일부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차명 계좌 운영과 허위 인턴 급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검찰 수사가 고발된 지 근 1년 만에 소환도 아닌 서면 조사 한 번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고발된 지 9개월째에 검찰의 서면 조사에 협조하였기에 ‘근 1년’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한 번의 서면 조사에 그쳤다’고 허위 보도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도덕성이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미 다수 언론에서 근 1년 만에 검찰이 신청인에게 서면을 보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청인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정정보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검찰 수사 일정 관련 자료를 증재부에 제출했으며, 증재부는 신청인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 협조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2개 동영상 속 진행자 발언에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열람차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 의원에 대해선 고발된 지 근 1년 만인 지난 5월 소환 아닌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 의원 검찰 수사’ 관련 정정보도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고발된 지 근 1년 만인 지난 5월 소환 아닌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의원은 고발 이후 10개월째인 20XX년 4월경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였고 같은 해 10월경 검찰의 요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일간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위 포털에 한함)에게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2개 동영상(유튜브 채널 영상 및 추천영상) 내용 중 “신청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는 취지의 진행자 발언을 모두 삭제한다.

정정보도

사례 03

2022서울조정414·415·416,

2022서울조정417·418·419 (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기사수정)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 논란 보도와 관련, 매체유형별로 정정보도문을 달리 게재하고, 인터넷신문 보도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A 과장의 폭언으로 병원장을 제외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퇴직한 의사들이 본인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법무부 민원 내부조사결과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 된 것일 뿐 감찰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조정대상보도 이후 다수 언론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인용해 후속 보도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장을 청취해 의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법무부 민원조사결과,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검토해 조정대상 매체별로 정정보도문안을 달리 마련하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청인의 반론을 보완해 기사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6개 매체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정정보도 및 기사수정)이나 취하(열람차단, 정정 및 반론보도)로 종결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 조정대상보도

**[전략]**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의혹이 집단 사표의 도화선이 됐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략]**

병원장을 제외하면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원이 그만둔 것이다. **[중략]**

의사들은 A 과장의 폭언 등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치료감호소에서 수련 중인 한 전공의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해 법무부는 현재 A 과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중략]**

A 과장 측은 “검찰과 법원에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라고 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① (신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쌓인 불만, 폭언에 터졌다…○○ 치료감호소 의사 ‘집단 사표’>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XX. X. X.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한 의사들이 A과장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민원 조사로 밝혀졌으며, 소속 의사 전원이 그만둔 것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이 진행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보도문 ② (인터넷신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치료감호소 의사 집단 사표에 법무부 진상조사…무슨 일 있었길래>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XX. X. X.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한 의사들이 A 과장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낸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법무부의 민원조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일간신문 <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 수정사항

### 〈인터넷신문 조정대상 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A 과장 측은 “검찰과 법원에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라고 했다.

(수정 후) A 과장은 “사표를 낸 B 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로부터 ‘전국 법원·검찰·경찰에 직접 전화하거나 공문을 보내 치료감호영장신청·청구·발부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라’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법행정업무를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정정보도 사례 04 < 2022서울조정861·86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시민단체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단체명을 오기한 것과 관련, 언론사가 원보도를 수정한 이후, 오기라는 취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별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단체가 국가지원금으로 고액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 보도해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심리가 개최되기 전 단체명을 잘못 표기했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기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단체가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취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해 피해구제 효과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 측은 이와 관련 리모델링 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절차와 비용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 관계자는 “김 회계사의 주장처럼 리모델링에 국고가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체 재정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 측은 공사비와 관련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 회계사의 공개와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리모델링과 관련해 비용과 계약서 공개를 할지 여부는 이사회 등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장△△ 팀장은 국고 지원에 대해 20XX년 26억 3천만 원(□□□ 21억 + ◇◇◇ 5.3억)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2억 3천만 원을 반납했다면서 국고지원은 사업비와 인건비, 비품비에 사용되며 회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립니다] <김☆☆ “▽▽▽ 리모델링 평당 500만 원, 이사들 ”너무 모자랐다. 다른 명목으로 엮었다”> 관련

**본문내용:** 본지의 조정대상보도 본문 중 ○○○○는 ▽▽▽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는 “○○○○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로서 해당 기사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사회> 섹션 기사목록(상단 3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정정보도 사례 05 2022대전조정40·4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난항을 예상한 보도와 관련, 인터넷신문과 함께 재건축 추진위원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인근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남편을 조합장에 출마시킨 후 지지를 호소하며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현 위원장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퇴진을 종용하는 등으로 괴롭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거나 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남편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없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현 위원장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보도해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 이후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해 2차례 후속보도 한 사실이 있으나 여전히 신청인과 제보자 간 입장차이가 큰 점을 인정해 정정보도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정정보도와 더불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사안의 특수성과 피해구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한 익명의 제보자는 “인근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본인이 중개해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현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합장 및 임대의원 선출로 선거가 진행 중인데 기존 재건축 사업에 관심도 없었던 자신의 남편을 조합장으로 출마시키고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두세 달 전에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현 위원장에게 욕설과 폭언 등은 물론, 노골적으로 물러나라는 등, 여러 차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괴롭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CCTV까지 설치한 상태”라면서 “인근 ○○○○주공아파트에 비해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이미 몇 년이 늦어진 상황에 이제야 소유주들이 화합을 하고 안정적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리사욕을 위한 이기주의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격분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주공아파트... 일부 소유주 갈등으로 난항 예고>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인근 공인중개사가 현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자신의 남편을 조합장에 출마시킨 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현 위원장에게 욕설, 폭언 및 퇴진을 종용하며 괴롭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 추진위원회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표명한 사실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방문한 사실도, 현 위원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퇴진을 종용한 사실도 없어 CCTV를 해당 공인중개사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제목은 굵게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주공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2개 단체 카카오톡방 (△△□□주공재건축방 및 동의서 제출방)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 정정보도 사례 06 < 2022서울조정1733·1734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속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으로 각각 합의해 피해구제 효과를 높인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 단체의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단체가 특정 민간 법률 플랫폼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신청인 단체가 출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의 하루 평균 사건의뢰 건수가 2개월 동안 2건을 밀돌고 있으며, 단체 내부규정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신청인 단체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 단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민간 법률 플랫폼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체는 다른 단체로, 신청인 단체의 공공 플랫폼을 통한 사건의뢰 건수는 실제로 훨씬 많고, 신청인 단체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단체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취재원 진술내용 등을 반영해 기사화했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대립 당사자들의 주장을 균형감 있게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들의 보도내용이 서로 다르며 일부 표현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대상보도별 피해구제보도문을 각각 마련함이 적절해 보인다고 양 측이 문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정정 및 반론보도와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일부 기사는 본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① **[전략]** 검찰은 변호사 단체인 ○○○○○○○○이 △△△△△ 등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 광고를 막은 ☆☆☆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후략]**

② **[전략]** ▽▽▽▽▽▽(☆☆)가 ‘◇◇’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대안으로 내세운 ‘◎◎ ◎◎◎’가 출시 2개월 동안 의뢰가 하루 평균 2건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는 변호사 찾기,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단 3건의 메뉴를 제공한다. 변호사나 의뢰인 본인이 아니면 다른 의뢰인이 맡긴 사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수입료나 상담 비용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중략]**

☆☆은 ‘◇◇’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 기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 <<<에 관한 규정과 윤리 장전을 각각 개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후략]**

③ **[전략]** ‘◇◇’ 운영사인 △△△△△는 “위헌 결정을 받고도 ◇◇ 회원 변호사들에게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한 데 강한 유감”이라며 “☆☆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반발했다.

△△△△△는 “☆☆의 징계 강행은 현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신고와 고발을 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경찰은 모두 변협의 신고와 고발을 무혐의로 판단했고, 현재는 지난 26일 ☆☆☆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후략]**

④ **[전략]** 현직 변호사들로 이뤄진 ▷▷ ▷▷ ▷▷ ▷▷ ▷▷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이소순 ☆☆☆회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략]**

모임은 또 ☆☆☆이 징계 근거로 삼은 ‘<<<< <<<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 회장 등이 ‘현재의 합헌 결정으로 ◇◇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한다. **[중략]**

모임은 아울러 ☆☆☆이 현재 심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모임은 강♡♡ 전 고검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번 형사 사건에 대응한다.



## 조정성립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 대안’ ☆☆ 공공플랫폼, 의뢰 하루 2건 밀돌아」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 ②에서 ☆☆과 관련한 사항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는 ∇∇∇∇∇∇∇가 아니고 ○○○○○○○○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또한, ∇∇∇∇∇∇∇ 측은 “○○ ○○○’는 ◇◇과 다른 공공플랫폼으로서 개별 변호사의 수입료나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 ○○ ○○○를 이용한 사건 의뢰는 위 사건의뢰 게시판 외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올린 프로필만을 보고 변호사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현직 변호사들, ‘◇◇’ 막는 ☆☆ 간부진 경찰에 고소」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 ④에서 ☆☆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 측은 “☆☆ 임원들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결의내용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현재 심판 대응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한 것도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 및 ☆☆의 회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닌 등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뉴스통신 홈페이지 사회>법원/검찰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②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④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뉴스통신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① 본문 수정〉

(수정 전) 공정거래위원회도 ◇◇ 광고를 막은 ☆☆☆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수정 후) 공정거래위원회도 ◇◇ 광고를 막은 ☆☆☆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 정정보도 사례 07 < 2022전북조정37·38/39·40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고위공무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부군수의 직원 근무평정 관여 및 폭언 등 갑질 의혹 보도와 관련, 원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반론을 보장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부군수가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고유 권한인 직원 근무평정과 근무지 배치에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로서 평정자인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업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보건소 직원의 근무지 배치 과정에서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편파 보도해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를 통해 확보한 제보자 진술 등을 반영해 기사를 작성했고, 조정심리 당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건대 신청인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월권행위인지 여부는 자치법규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A 부단체장이 ○○군보건소장 직무대리에 대해 업무관련 권한의 도를 넘어 직원 근무평정에 대한 월권행위까지 △△△ B 과장과 조율, 상의해서 보고하라는 지시 명령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중략]

이번 보건소 인사 시 A 부단체장이 모 직원을 □□□□담당 자리에 배치하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처사와 또 소장 직무대리와 보건소 C 과장이 직원 근평을 조정, 조율해서 보고하라 했음에도 직무대리는 독단적 일처리를 했으며, 이에 A 부단체장은 △△△ B 과장을 시켜 다시 조정해서 작성 보고하라 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장직무대리는 폭언과 업무상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중략]

A 부단체장은 조직 직제 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군수의 명을 받아 공적인 ○○군 보건소장 자리 또한 4급 직무대리이므로 근평뿐만 아니라, 근무지 배치도 관여할 수 없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 ○○ 부단체장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부단체장이 보건소 소장직무대리에 대해 업무관련 권한의 도를 넘어 근무평정과 직원 근무지 배치에 관여했으며, 폭언과 업무상 갑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군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소장이며 확인자는 부군수이고, '◇◇◇◇◇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 부군수가 근무평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위 기사에 대해 김☆☆ 전 ○○군 부군수는 보건소 인사 및 근무평정과 관련해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일간신문 8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보도

사례 08

2022서울조정1939, 2022서울조정1971-1972 (병합)

정정청구,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1. 단체(국가기관), 2.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공직자의 인터뷰 보도와 관련,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자료사진 설명의 정정과 반론보도문 게재 및 기사수정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태풍 영향으로 영남권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외부 행사에 참석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직원이 취재기자에게 ‘산사태 경보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신청인 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소속 공무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정대상보도에서 직원의 사진을 삭제하고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고,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취재 경위 등을 확인했으며,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자료사진의 설명을 정정하고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기사수정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임○○ △△청 □□이 19일 오전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영남권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무사안일 △△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포토]임○○ △△청 □□ “산사태 경보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지난 ◇월 ◇일자 전국뉴스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도에 게재된 사진에 관한 설명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임○○ □□은 “△△ 관련 행사 후 이동 중 기자의 질문을 받고 외부 행사 중이라 필요한 자료나 민원이 있으면 대변인실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고, 산사태 경보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무사안일 △△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정 후)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정정보도 사례 09 < 2022서울조정214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도심 내 대규모 인명 사고 및 경찰 인력 부족 사태 등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원보도를 자체 수정하였으나, 독자들이 기사 수정 경위 등을 알 수 있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도심 내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 당일, 현장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일반 경비는 물론 지원업무도 맡을 수 있는 경찰 인력인 경비단 약 200명이 대기 중이었지만 위 사고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업무 규정에 따라 경비단의 관할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정지역 경비에 한정되며, 대통령 관저는 경호보안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로 사전 안전 확보는 물론 24시간 안전유지가 필수적인 장소이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 배치된 총 인원은 약 〇〇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으로 허위·과장 보도해 신청인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빈집’이라는 표현과 경비단 규모 등의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미 정정보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기관이 조정대상보도에 언급된 ‘△△△경비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정대상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지만, 신청인 기관이 대통령 관저 경비업무 관장 기관으로서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수치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되 독자들이 조정대상보도의 수정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신청인 입장을 반론보도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서울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도 경찰 인력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초구 자택에서 지내고 있어 한남동 관저는 현재 ‘빈집’이다.

관저에 배치된 경력은 △△△경비단이다.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찰 조직으로 관저 외곽을 지키는 임무를 맡지만, 현재 빈 공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과 인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 참사, 경력 부족 사태 등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경비단은 서울경찰청의 직할대로 특정 지역 경비 외에도 일반 경비는 물론 지원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중략]**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비단’ 소속 3개 중대가 배치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개 중대가 투입됐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1개 중대가 배치됐다. 약 200명 규모이다. 교대 근무 형태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상황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았다.

하지만 한남동 관저는 현재 빈집이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 머물고 있어서다. 참사 당일 서초동 자택 인근에도 다른 4개 기동대가 주·야간으로 배치됐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단독]참사 당일 ‘빈집’인 尹관저 지킨 경찰…지원 불가했다」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일반 경비 등도 맡을 수 있는 △△△경비단 인력 약 200명이 대기 중이었지만 ‘빈집’인 대통령 관저 경비를 이유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저 경비에 투입된 인원은 200명이 아니라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는 “대통령 관저는 경호보안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빈집’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사건/사고>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